

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관세의 동향과 함의*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The Implications of the U.S Customs Case Laws

하충룡(Choong Lyong Ha)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미국변호사(뉴욕주)

목 차

- | | |
|-------------------------------|-------------|
| I. 서론 | V. 요약 및 시사점 |
| II. 한미FTA 상의 특혜원산지규정 | 참고문헌 |
| III. FTA특혜관세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관세법체계 | ABSTRACT |
| IV. FTA특혜관세분쟁과 관련된 미국관례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관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제어 : 한·미 FTA, 특혜관세, 원산지, HTSUS, 연방무역법원, 미국관세법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온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점점 치열해지는 수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잡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역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추진해온 FTA 중에서도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FTA를 든다면 한-EU FTA와 한-미 FTA를 들 수 있고 이중에서 한-미 FTA는 국내의적으로 가장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발효되었다는 점에서 다방면에서의 후속대응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FTA 관련하여 마련해야 할 후속조치로서 국내산업의 피해보전, 경제주권의 보호,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태까지 FTA를 통해 양국 간에 '무역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길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FTA를 통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임을 입증해야 한다. 수출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마치 사람의 경우에 국적이 한국임을 입증하여 한국인의 대우를 받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 입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특정국에서 생산되었을 경우 즉 원료의 획득과 생산과정이 모두 특정국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원산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일부 부품이나 재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한국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수출입업자에게 한국산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미 FTA 협상 뿐 아니라 여타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FTA와 관련한 국내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체계적이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에 걸쳐서 전반적인 원산지 규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는 경우와,¹⁾ 지역중심 FTA 원산지규정 즉 아시아, 미주, 유럽 등으로 나누

1) 이명구, "우리나라의 FTA원산지 제도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357-376, 정재완, 「원산지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상 한계」, 관세와 무역, 2007, 이상진·김무한·김형철, "FTA 원산지 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9, pp.155-174, 남풍우,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0, pp.139-162, 신한동,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 pp.273-304.

어 원산지규정의 특성과 비즈니스 전략 등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로 나누어지고 있다.²⁾ 지역 중심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향후 FTA 체결에 대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³⁾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협상의 진척 상황을 향후에 반영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유럽 및 미국 지역과는 현재 발효 중인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특성을 협정문을 위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형복·황해록(2009)의 연구에서는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확인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규정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고,⁴⁾ 남풍우(2010)에서도 한국이 당사자가 된 FTA에서의 원산지검증제도의 규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⁵⁾ 특히 이상진·김무한·김형철(2009)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원산지규정 관련한 논문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고 각 FTA 별로 원산지결정원리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⁶⁾

하지만 기존의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협정문을 해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FTA 협정문에 대한 상대국의 국내법 체계 속에서 법원의 태도를 소개하거나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FTA상의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기업이 상대국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원산지 규정의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는 실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설령 세관당국에 의하여 제재를 당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세관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기란 물적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관세법상의 큰 틀에서 발견되는 FTA 원산지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한 미국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서 미국세관당국의 제재를 대비하여 합리적인 법적대응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FTA상의 원산지 규정과 이를 적용하는

2) 남풍우·최준호,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pp.183-203, 김연숙,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 pp.239-256, 라공우,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 pp.149-177, 채형복·황해록,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고』, 제3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pp.547-575, 조정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 pp.253-273, 채형복·황해록,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pp.599-630.

3) 김연숙,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 pp.239-256, 조정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 pp.253-273.

4) 채형복·황해록 전제논문, 2009, pp.551-557.

5) 남풍우 전제논문, 2010, p.145.

6) 이상진·김무한·김형철, 전제논문, 2009, 163-166.

미국관세법 구조를 살펴보고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연방법원에서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한미 FTA 상의 원산지입증과 관련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미 FTA 상의 특혜원산지규정

1. 원산지결정기준 일반

1)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성

무역거래에서 원산지라고 함은 관세의 부과나 무역정책을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판단계로서 어떤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통관서류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산지는 상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의 조립이나 단순한 통과국이나 기술제공국과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생산지와 상표를 결합한 지리적 표시와도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⁷⁾

각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의 규제는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장벽의 철폐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1947년 성립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제9조에서 원산지규정을 두었으며 최근에는 WTO에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을 마련하고 있다.⁸⁾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이후에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입증요건이 관세법시행령에 규정되면서부터 원산지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⁹⁾

7) 국제원산지 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2, p.4.

8) 국제원산지 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2, p.5.

9)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 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 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관세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누어진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양국 또는 지역간 무역에서의 관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특혜관세(GSP)의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다.¹⁰⁾ 이에 반해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혜택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한 국가의 무역정책 즉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선별된 상대국에 대한 제재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FTA에 의하여 무관세 혜택의 차별적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 결정기준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관세부과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 FTA 협정당사국간의 원산지결정기준은 WTO 등 여타의 국제적인 원산지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된다. 이는 FTA에 의한 특정 당사국간의 특혜관세혜택은 불특정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더욱 구체적으로 관세특혜의 의사를 상대방 국가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 원산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엄격성은 각국 세관당국이 어느 정도 원산지검증을 철저히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자율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검증의 정도가 느슨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는 향후에 사후검증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자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될 때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과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자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될 때 적용되는 실질적 변형기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나누어진다.¹¹⁾ 이외에도 보충적 특례규정으로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기준 등에 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한편 실질적 변형기준을 불완전생산품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¹²⁾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국제원산지 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2, p.4.

11) 국제원산지 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2, p.16.

이상에서 언급된 각종의 기준들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강 산업의 경우 FTA 협정상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 철광석 원료의 폭등으로 실질부가가치의 비중이 줄어들면 FTA의 관세면제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 한편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아무리 부가가치는 증가할지라도 원료의 성질이나 형질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금광석에서 추출된 낮은 순도의 금을 수입하여 순도를 높이는 경우에 부가가치는 상승할지라도 금이라고 하는 상품의 세번은 변경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게되어 FTA 협정체결상대국에 수출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잃게 된다.

이렇듯 FTA 협정에서 어떠한 종류의 원산지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FTA 관세혜택을 수혜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각종 원산지기준의 적용방식의 다양성은 산업에 따라서 FTA 관세혜택의 효과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원자재가격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기준에 대한 협상은 양당사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상 전에 치밀하게 계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한미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주요내용

1) 한미 FTA상 원산지규정의 구성

한미 FTA 협정문 제6장에서 원산지규정과 원산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¹³⁾ 동 협정문 제6장은 1절과 2절로 나누어 1절에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실제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¹⁴⁾ 2절에서는 FTA 특혜관세의 신청과¹⁵⁾ 원산지검증¹⁶⁾ 등 원산지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동 협정문 제6장은 부속서 6-가 그리고 6-나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서 6-가에서는 품목별로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부속서 6-나에서는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허용수준에 대한 예외를 제시하고 있다.

12) 국제원산지 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2, p.18.

13) 외교부, 한미 FTA 협정문.

14) 한미 FTA 협정, 제6.1조 - 제6.14조.

15) 한미 FTA 협정, 제6.15조.

16) 한미 FTA 협정, 제6.18조.

2) 한미 FTA 주요 원산지규정

한미 FTA 협정문 제6.1조에서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⁷⁾ 동 조의 가항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상품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항 1호에서는 세번변경 기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과 부가가치기준 및 여타의 미소기준 누적기준 등에 대한 적용원칙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항에서는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가 원산지로 인정받는 경우 전적으로 한 쪽 또는 양 쪽 국가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가항과 나항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재료에 대한 원산지 결정은 나항을 적용하고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가항의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적인 국제무역에서는 일국에서 완전생산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원산지 상품의 기준은 대부분 나항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6.2조에서 제6.4조까지는 원산지의 결정과정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에 대한 산출방식과,¹⁸⁾ 산출에 필수적인 재료의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⁹⁾ 제6.5조에서는 양당사국 내에서 누적적으로 생산된 경우에 이들 상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적절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경우에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규정하는 최소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²⁰⁾ 제6.7조 및 제6.8조에서는 대체가능상품이나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와 부속품 및 공구의 경우에 따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상품에 대하여만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게 하여 원산지규정이 과다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²¹⁾ 제6.9조에서는 세트상품의 경우에 각각의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규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²²⁾

또한 제6.10조와 제6.11조에서는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하여는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 생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상품의 고려여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17) 한미 FTA 협정문 제6.1조, “이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 번 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18) 한미 FTA 협정문 제6.2조에서는 공제법과 집적법 중 두 가지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결정하게 하고 있다. 즉 동조 가항에서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조정가치(AV) - 비원산지재료가치(VNM)/조정가치(AV) X 100]과 나 항에서는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집적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원산지재료가치(VOM)/조정가치(AV) X 100]을 규정하고 있다.

19) 한미 FTA 협정문 제6.3조(재료의 가치), 제6.4조(재료의 가치에 대한 추가조정).

20) 한미 FTA 협정문 제6.5조(누적), 제6.6조(최소허용기준).

21) 한미 FTA 협정문 제6.7조(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제6.8조(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22) 한미 FTA 협정문 제6.9조(상품의 세트).

다.²³⁾ 제6.12조에서는 간접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결정여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13조에서는 통과 및 환적의 경우에 운송에 필요한 조치이외에 비당사자국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공정도 원산지인정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제6.14조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있어서 양당사국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²⁴⁾

Ⅲ. FTA특혜관세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관세법체계

향후에 한미FTA의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의 적용과 관련한 미국세관당국(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의 조치가 있을 경우 한국기업이 법적대응절차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미국세관당국의 원산지 관련한 조치가 있어서 미연방방법원의 관할 체계와 분쟁시에 적용되는 미국관세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FTA특혜관세분쟁의 소송관할권

FTA원산지분쟁은 관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수출입자와 연방세관이 주된 분쟁당사자가 될 것이다. 무역업자가 관세특혜를 받기 위하여 연방세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미연방무역법원(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미연방무역법원은 무역 관련한 분쟁에서는 Tariff Act of 1930 §1581(i)에 의하여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²⁵⁾ 동 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관세율, 수수료 및 여타의 세금으로 인해 미연방에 제기되는 민사소송은 연방무역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연방무역법원의 상급법원인 연방특수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23) 한미 FTA 협정문 제6.10조(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6.11조(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24) 한미 FTA 협정문 제6.12조(간접재료), 제6.11조(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제6.12조(간접재료), 제6.13조(통과 및 환적), 제6.14조(협의 및 수정).

25) 28 U.S.C.A. § 1581, (i) In addition to the jurisdiction conferred upon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by subsections (a)-(h) of this section and subject to the exception set forth in subsection (j) of this section,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commenced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agencies, or its officers, that arises out of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providing for (1) revenue from imports or tonnage; (2) tariffs, duties, fees, or other taxes on the importation of merchandise for reasons other than the raising of revenue; (3) embargoes or other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the importation of merchandise for reasons other than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health or safety; or (4)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with respect to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1)-(3) of this subsection and subsections (a)-(h) of this section.

Federal Circuit)은 이러한 관세 및 여타 무역관련 분쟁에서 미연방무역법원의 관할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여타의 다른 연방무역법조항에서 무역 관련 분쟁의 관할권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고 하였다.²⁶⁾ 따라서 소송의 관할권에 관하여서는 미국 통상법 각각의 조항에 나타난 관할법원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연방무역법원의 관할권이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관세율 및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연방세관을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Tariff Act of 1930 §1581(i)에 의하여 미연방무역법원이 우선적 관할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특혜원산지의 입증과 관련한 분쟁인 경우에는 관세면제를 위한 소송임으로 인해 연방무역법원에 우선적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Ford Motor Company vs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²⁷⁾ 원산지입증의 미비로 인하여 미연방세관이 거부한 특혜관세에 대하여 원고는 미연방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Hartford Fire Ins. Co. v. U.S. 사건에서는 미연방세관이 원고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징수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Tariff Act of 1930 § 1581 (i)에 의하여 미연방무역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동 법원은 이의제기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Tariff Act of 1930 §1514에²⁸⁾ 의하여 관할권 없음을 판결하였다.²⁹⁾ 이에 원고는 연방특수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며, 동 법원은 원고가 연방세관의 반덤핑관세의 부과의 인지시점을 고려한다면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미연방무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하여 미연방무역법원의 관할권 부인에 대하여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Hitachi Home Electronics (America), Inc. v. U.S. 사건에서는³⁰⁾ 히다치사는 멕시코에서 제작된 플라즈마 TV에 대하여 미연방세관이 부과한 5%의 종가세는 NAFTA상에서 인정되는 무관세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연방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연방세관은 이에 대하여 2년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히다치사는 Tariff Act of 1930 §1581(a)에 근거하여³¹⁾ 연방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연방세관이 이의제기에 대하여 아직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어 동조에 의해서는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³²⁾ 원

26) International Custom Products, Inc. v. U.S., 467 F.3d 1324-1327 (C.A.Fed.,2006), “Although we have described subsection 1581(i)(4) as a “broad residual jurisdictional provision,” Miller & Co. v. United States, 824 F.2d 961, 963 (Fed.Cir.1987), and even a “catch-all provision,” Norcal/Crosetti Foods, Inc., 963 F.2d at 359 (Fed.Cir.1992), “the unambiguous precedents of this court make clear that its scope is strictly limited,” id., and that the protest procedure cannot be easily circumvented...”

27)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2014).

28) 19 U.S.C.A. § 1514.

29) Hartford Fire Ins. Co. v. U.S., 648 F.3d 1371, C.A.Fed., 2011.

30) Hitachi Home Electronics (America), Inc. v. U.S., 661 F.3d 1343, C.A.Fed., 2011.

31) 28 U.S.C.A. § 1581 (a)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commenced to contest the denial of a protest, in whole or in part, under section 515 of the Tariff Act of 1930.

고는 관할권기각에 대하여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도 단순한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이를 연방세관이 이의에 대하여 거부나 채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연방 무역법원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연방무역법원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³³⁾

2. 미국관세법

미국에서 통관과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집행은 국토안보부(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의 연방세관당국(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이 하고 있다.³⁴⁾ 관세행정의 집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역관련 모든 법과 행정 명령, 판례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문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관세법(CUSTOMS DUTIES LAWS: TITLE 19 U.S.C.)과³⁵⁾ 관세실무적으로 실질적인 규제근거로서 역할을 하는 연방관세규제법(Title 19 Code of Federal Regulation)을 들 수 있다.³⁶⁾ 이외에도 미국연방세관의 관세결정관련 선례, 그리고 법원의 판례 등은 미국관세법의 해석과 시행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미국관세법의 체계 속에서도 연방세관과 무역업자가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면서도 가장 객관적인 사실에 기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관세법영역은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상의³⁷⁾ 상품분류방식과 관련한 분쟁영역이며, 특히 2011년에 발생한 모든 관세법 분쟁은 통합관세율표에 기한 관세의 분류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³⁸⁾ 관세부과를 위한 상품분류는 특정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이루어지므로 상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다른 관세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분류를 위한 상품의 분류사례는 단순히 선례로서만 기능을 할 뿐 어떠한 향후에 이루지는 분류과정에서 어떠한 법적구속력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³⁹⁾

연방세관의 관세부과를 위한 통합관세율표상의 상품의 분류의 명칭에 대하여 미연방특수항

32) Hitachi Home Electronics (America), Inc. v. U.S., 661 F.3d 1343, 1345 C.A.Fed., 2011.

33) Hitachi Home Electronics (America), Inc. v. U.S., 661 F.3d 1343, 1345 C.A.Fed., 2011.

34) 일반적으로 customs, customs duty, tariff 등은 관세라는 뜻으로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customs는 크게 통관이라는 뜻으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duty와 tariff는 관세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35) 19 U.S.C. CHAPTER 1-27.

36) 19 CFR.

37)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fficial Harmonized Tariff Schedule, 2015 참조, <http://www.usitc.gov/tata/hts/index.htm>, 2015. 08. 02. 접속.

38) Spak, G. J. Hansen, F. R. and Hickman D. J., "2011 INTERNATIONAL TRADE LAW DECISIONS OF THE FEDERAL CIRCUIT", 61 AMULR 1105, 1113,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April, 2012.

39) 전게서 p 1113.

소법원(the Federal Circuit Court)은 “일반해석원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s)을 따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⁴⁰⁾ GRI는 미국연방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제정한 관세부과를 위한 상품분류원칙인데 모두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¹⁾ 제1항에서는 대분류 및 소분류의 명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의미에 따라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부분품과 완제품사이의 해석기준, 제3항에서는 2개 이상의 대분류 및 소분류가 일견 (prima facie) 적용 가능한 경우에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범주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나머지 제4장에서 제6장까지는 특정 분류에 귀속될 수 없는 잔여물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가장 유사한 범주를 선택하는 원칙과 그리고 대분류와 소분류사이의 구성에 관한 해석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Dell Products LP v. U.S. 사건에서는 연방특수항소법원이 노트북컴퓨터의 보조배터리에 대하여 노트북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GRI를 적용하고 있다.⁴²⁾ 동 사건에서 원고는 노트북의 보조배터리가 본제품인 노트북과 같이 포장되어 통관되었기 때문에 동일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특수항소법원은 단순히 노트북과 보조배터리가 같이 포장된 것만으로는 동일 상품으로 볼 수는 없고 매매계약을 위한 청약 시에 보조배터리가 같이 포함되어 최종가격에 합산되어 거래될 때에만 동일 제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⁴³⁾ 동 판례에서는 연방특수항소법원은 GRI 3(b)조를 적용하여 개별적인 물품이 판매를 위해 같이 제공된다면 개별적인 물품은 제각각의 기능이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일부로 보아 동일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GRI 1조를 적용하여 각각의 개별제품은 통합관세율표상의 분류목록의 의미에 적합한 개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⁴⁾

통관물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연방무역법원과 연방특수항소법원이 GRI원칙을 적용한 판례로서 Lemans Corp. v. U.S 사건⁴⁵⁾에서는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시 입는 특수복을 ‘스포츠장비’로서 수입하려고 하였는데 연방세관이 이를 ‘의복’으로 분류한데 대하여 연방무역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여 상급법원인 연방특수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동 사건에서 원고는 “수입상품이 의복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고 주로 스포츠를 하는 동안에 착용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장비로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며⁴⁶⁾ 동 제품은 ‘일견(prima facie) 스포츠용품이라고

40) Store WALL, LLC v. U.S., 644 F.3d 1358, 1362, C.A.Fed., 2011.

41) <http://www.usitc.gov/publications/docs/tata/hts/bychapter/1000gn.pdf>, 2015. 08. 03. 접속.

42) Dell Products LP v. U.S., 642 F.3d 1055, C.A.Fed., 2011.

43) Dell Products LP v. U.S., 642 F.3d 1055, 1061, C.A.Fed., 2011.

44) Dell Products LP v. U.S., 642 F.3d 1055, 1059, C.A.Fed., 2011.

45) Lemans Corp. v. U.S., 660 F.3d 1311, C.A.Fed., 2011.

46) Lemans Corp. v. U.S., 660 F.3d 1311, 1315, C.A.Fed., 2011.

볼 수 있으므로 GRI 3을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물품분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⁷⁾ 하지만 이러한 원고의 두 가지 주장을 항소법원에서는 모두 기각하여 연방세관의 분류를 인정한 연방무역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특히 연방특수항소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GRI 3의 적용요구에 대하여 해당 수입품은 스포츠장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GRI 1조를 적용하여 ‘의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적용하여 분류한 연방세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⁴⁸⁾

IV. FTA특혜관세분쟁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

미국의 FTA원산지관세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향후에 한미FTA의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의 적용과 관련한 미국세관당국(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의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례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미국의 세관당국의 조치들은 결국 미국연방법원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해서 이러한 세관당국의 조치들의 법적타당성을 판단하게 될 미국연방법원의 태도를 판례를 통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에 한국기업의 유사분쟁사례에 대한 법적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장에서는 FTA원산지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세관과 다툼이 있었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Ford Motor Company vs United States

FTA의 특혜관세율의 적용에서 원산지입증의 미비로 인한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건으로서 Ford Motor Company vs United States 사건이 있다.⁴⁹⁾ 동 사건에서 미국 연방세관은 수입후 관세환급불가에 대한 합당한 소명을 함으로써 원고가 패소하였다. 연방세관은 북미자유무역 협정하에 인정되는 관세환급의 혜택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와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자로부터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는 연방세관이 통제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할 때이며 이외에 수입후에 지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은 정식의 청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⁰⁾

47) Lemans Corp. v. U.S., 660 F.3d 1311, 1318, C.A.Fed., 2011.

48) Lemans Corp. v. U.S., 660 F.3d 1311, 1318, C.A.Fed., 2011.

49)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2014).

이러한 미국연방세관의 주장에 대하여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세관이 이러한 관세환급절차에서 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당한 소명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피고의 잘못을 지적하고 동 사건을 다시 미연방국제무역법원으로 환송시켰다.⁵¹⁾ 이러한 연방항소법원의 환송사유에 대하여 미국연방세관은 북미자유무역협정상에 나타난 원산지증명의 요건에 대한 입법목적 해석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인 절차를 적용하였음을 소명함으로써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주장하여 승소하였다.

즉 북미자유무역협정 하에서⁵²⁾ 이러한 관세환급의 신청절차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면제요건에 차별을 두는 이유로서 미국연방세관은 동 조항에서는 두 가지의 입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는 전자적 조정시스템(electronic reconciliation system)에⁵³⁾ 의한 신청을 통해 착오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수입 후에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의 미비 시에 정상적인 신청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⁵⁴⁾

동 사건에서 나타나는 미국연방세관은 물품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미국관세법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차적인 해석기능을 보여 함에 있어서 다수의 판례에서는 의회가 입법당시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률시행기관이 세부규제로서 입법의 모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러한 시행기관의 규제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고 실제적인 면에서 악의적이지 않아야 하

50)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2014.

51)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1351, 2014.

52) 19 USC § 1520(d) Goods qualifying under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a valid protest was not filed, the Customs Service ma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reliquidate an entry to refund any excess duties (including any merchandise processing fees) paid on a good qualifying under the rules of origin set out in section 3332 of this title, section 202 of the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section 4033 of this title, section 202 of the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section 203 of th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section 202 of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section 203 of the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or section 203 of the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for which no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made at the time of importation if the importer, within 1 year after the date of importation, files, in accordance with those regulations, a claim that includes-

- (1) a written declaration that the good qualified under the applicable rules at the time of importation;
- (2) copies of all applicable NAFTA Certificates of Origin (as defined in section 1508(b)(1) of this title), or other certificates or certifications of origin, as the case may be; and
- (3) such other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s as the Customs Service may require.

53) Tariff Act of 1930, 19 U.S.C. § 1484(b); 19 U.S.C. § 1401(s) "The term "reconciliation" means an electronic process, initiated at the request of an importer, under which the elements of an entry (other than those elements related to the admissibility of the merchandise) that are undetermined at the time the importer files or transmits the documentation or information required by section 1484(a)(1)(B) of this title, or the import activity summary statement, are provided to the Customs Service at a later time. A reconciliation is treated as an entry for purposes of liquidation, reliquidation, recordkeeping, and protest." 19 U.S.C. § 1401(s).

54)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1351, 2014.

며, 법률과 정면으로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행정기관의 입법보충권을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⁵⁵⁾ 연방법원에 의한 이러한 입법보완기능의 적극적인 인정으로 인하여 미국연방세관당국도 한미 FTA 상의 원산지규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연방법원은 연방세관당국이 광범위하게 서류제출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관세특혜를 거부하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관세면제관련 서류의 제출을 강요할 수 있게 하거나 수입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번 면책권이 부여되면 수입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으므로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와는 다르게 환급절차를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⁵⁶⁾

동 사건에서 원고 Ford Motor Co. 는 미국연방세관의 차별적인 관세면제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산지증명을 제공하지 못한 데 사건의 본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의 제출미비를 연방세관의 차별적인 대우로 간주하고 특혜관세의 환급을 위하여 소송을 시작한데 대해서는 연방세관을 상대하는 소송전략에서 미비한 점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MERCK & CO. INC. vs UNITED STATES

MERCK & CO. INC. vs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을 NAFTA지역으로 수출하였을 때 연방세관이 환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요청하는 원고가 미연방무역법원에 제소하였다.⁵⁷⁾ 원고가 NAFTA국가에 수출한 물품은 아일랜드로부터 수입한 화학물질인데 이와 대체되는 미사용물품 (substitute unused merchandise)을 NAFTA국가에 수출하였을 때에도 수입 시에 지급하였던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미연방무역법원에서는 해당 상품이 관세환급 제한 품목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각하였다.⁵⁸⁾

본 사건에서 원고에 의하여 주장된 재수출관련 관세환급은 미국관세법(1930) §313(j)(2)에 근거하고 있으며⁵⁹⁾, 연방세관에 의한 관세환급의 거절은 미국관세법(1930) §313(j)(4)(A)에 근

55) United States v. Mead Corp., 533 U.S. 218, 227, 2001; United States v. Morton, 467 U.S. 822, 834, 1984.

56)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1356, 2014.

57) Merck & Co. Inc. v. U.S., 435 F.Supp.2d 1253 (CIT, 2006).

58) Merck & Co. Inc. v. U.S., 435 F.Supp.2d 1253 (CIT, 2006).

59) 19 U.S.C.A. § 1313(j)(2) Subject to paragraph (4), if there is, with respect to imported merchandise on which was paid any

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⁶⁰⁾ 동 관세법 §313(j)(2)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이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시에 납부했던 관세는 수입자에게 다시 환급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관세법 §313(j)(4)(A)에서는 이러한 관세환급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관세법 §203(a)에서 지정하는 예외를 제외한 수입품에 대하여 대체가능한 물품을 NAFTA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⁶¹⁾ 즉 이 규정은 NAFTA에 의한 무관세지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무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듦으로서 NAFTA와 미국관세법상(1930)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사건에서 원고는 미국관세법(1930) §313(j)(4)(A)를 연방세관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즉 원고는 동조에서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환급제한의 예외가 되는 관세법 §203(a)상의 상품들에 속하는 물품을 수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연방세관은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법 §203(a)상의 상품들에 속하는 물품이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환급제한의 예외기준을 수입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수출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차를 보였다.⁶²⁾ 이러한 해석 차이에 대하여 미연방무역법원은 미국의회의 입법의지와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통하여 연방세관의 해석의 타당성여부를 판정하였다. 동 법원은 미국의회에서 1993년도에 특별히 지정된 몇몇의 상품을 제외하고⁶³⁾ 관세환급을 제한하면서 그 제한사유에 대

duty, tax, or fee imposed under Federal law upon entry or importation, any other merchandise (whether imported or domestic), that--(A) is commercially interchangeable with such imported merchandise; (B) is, before the close of the 3-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importa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either exported or destroyed under customs supervision; and (C) before such exportation or destruction-- (i) is not used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ii) is in the possession of, including ownership while in bailment, in leased facilities, in transit to, or in any other manner under the operational control of, the party claiming drawback under this paragraph, if that party-- then,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upon the exportation or destruction of such other merchandise the amount of each such duty, tax, and fee paid regarding the imported merchandise shall be refunded as drawback under this subsection, but in no case may the total drawback on the imported merchandise, whether available under this paragraph or any other provision of law or any combination thereof, exceed 99 percent of that duty, tax, or fee...

60) 19 U.S.C.A. § 1313(j) (4)(A) Effective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e exportation to a NAFTA country, as defined in section 2(4)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19 U.S.C.A. § 3301(4)], of merchandise that is fungible with and substituted for imported merchandise, other than merchandise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8) of section 203(a) of that Act [19 U.S.C.A. § 3333(a)], shall not constitute an exportation for purposes of paragraph (2).

61) 19 U.S.C.A. § 3333(a) "Good subject to NAFTA drawback" defined For purposes of this Act and the amendments made by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term "good subject to NAFTA drawback" means any imported good other than the following: (1) A good entered under bond for transportation and exportation to a NAFTA country.....(8) A good used as a material, or substituted for by a good of the same kind and quality that is used as a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A) apparel, or (B) a good provided for in subheading 6307.90.99 (insofar as it relates to furniture moving pads), 5811.00.20, or 5811.00.30 of the HTS, that is exported to Canada and that is subject to Canada's most-favored-nation rate of duty upon importation into Canada.

62) Merck & Co. Inc. v. U.S., 435 F.Supp.2d 1253, 1258 (CIT, 2006).

63) 19 U.S.C.A. § 3333(a).

하여 NAFTA 국가간 관세환급의 제한이 주된 사유라고 함으로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연방세관의 해석이 타당하며, 연방세관의 규제방향도 의회의 입법 의지와 큰 괴리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를 결정하였다.⁶⁴⁾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여 상대편 당사국의 관련법제와 법원의 태도를 동시에 봄으로써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첫째,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연방세관에서 적용하는 상품의 분류는 실제로 수출입업자가 낮은 관세율의 부과를 위하여 원하는 범주와는 다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방세관의 분류는 상품의 취급방식과 거래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이기도 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FTA특혜관세와 관련한 원산지분쟁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분쟁은 수출입자가 주로 원고가 되고 미국연방세관이 피고가 된다. 이들 당사자간의 분쟁을 관할하는 1심법원은 미국 연방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된다. 만약 동 법원의 결과에 당사자가 불복한다면 항소심으로서 연방특수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방특수항소법원이 무역관련 최상위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Ford Motor Company vs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특혜관세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입증의 면제와 관련하여 미연방세관은 원고는 사후적으로 신청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특혜관세를 거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특혜관세의 서류요건에 대하여 연방세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수출입자의 대항권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64) Merck & Co. Inc. v. U.S., 435 F.Supp.2d 1253, 1259-60 (CIT, 2006).

셋째, MERCK & CO. INC. vs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FTA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서는 미국관세법에서 이루지는 환급제도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FTA지역 바깥에서 수입하여 FTA체결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결국 FTA 미체결국이 FTA 체결사이의 무관세 혜택을 이용하여 FTA체결효과를 획득하는데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FTA 규정과 미국관세법이 상호 연계된 관세통제시스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협정문, 미국법 구조 및 판례를 통하여 볼 때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관련 판례 위주로 살펴보았지만 향후에는 통합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와 관련된 분쟁사례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국제원산지 정보원, 「원산지결정기준」, 2012.
- 김연숙,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
- 남풍우,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0.
- 남풍우·최준호,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라공우,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
- 신한동,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

- 이명구,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 제도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 이상진·김무한·김형철,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
- 정재완, 「원산지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상 한계」, 관세와 무역, 2007.
- 조정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0.
- 채형복·황해륙,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고」, 제3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채형복·황해륙,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Spak, G. J. Hansen, F. R. and Hickman D. J., “2011 INTERNATIONAL TRADE LAW DECISIONS OF THE FEDERAL CIRCUIT”,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2012.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fficial Harmonized Tariff Schedule*, 2015.
- Dell Products LP v. U.S., 642 F.3d 1055, 1059, C.A.Fed., 2011.
- Dell Products LP v. U.S., 642 F.3d 1055, 1061, C.A.Fed., 2011.
- Dell Products LP v. U.S., 642 F.3d 1055, C.A.Fed., 2011.
-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2014).
-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1351, 2014.
-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1356, 2014.
- Ford Motor Company v. United States, 978 F.Supp.2d 1350, 2014.
- Hartford Fire Ins. Co. v. U.S., 648 F.3d 1371, C.A.Fed., 2011.
- Hitachi Home Electronics (America), Inc. v. U.S., 661 F.3d 1343, 1345 C.A.Fed., 2011.
- Hitachi Home Electronics (America), Inc. v. U.S., 661 F.3d 1343, C.A.Fed., 2011.
- International Custom Products, Inc. v. U.S., 467 F.3d 1324, 1327 (C.A.Fed.,2006).
- Lemans Corp. v. U.S., 660 F.3d 1311, 1315, C.A.Fed., 2011.
- Lemans Corp. v. U.S., 660 F.3d 1311, 1318, C.A.Fed., 2011.
- Lemans Corp. v. U.S., 660 F.3d 1311, C.A.Fed., 2011.
- Merck & Co. Inc. v. U.S., 435 F.Supp.2d 1253 (CIT, 2006).

-
- Merck & Co. Inc. v. U.S., 435 F.Supp.2d 1253, 1258 (CIT, 2006).
Merck & Co. Inc. v. U.S., 435 F.Supp.2d 1253, 1259-60 (CIT, 2006).
Miller & Co. v. United States, 824 F.2d 961, 963 (Fed.Cir.1987).
Norcal/Crosetti Foods, Inc., 963 F.2d at 359 (Fed.Cir.1992).
STEMCOR USA, INC. v. MIRACERO, S.A. DE C.V., 2014 WL 5005041 (S.D.N.Y.).
Store WALL, LLC v. U.S., 644 F.3d 1358, 1362, C.A.Fed., 2011.
United States v. Mead Corp., 533 U.S. 218, 227, 2001.
United States v. Morton, 467 U.S. 822, 834, 1984.

ABSTRACT

The Disputes of Product Origin in Korea-U.S. FTA: The Implications of the U.S Case Laws

Choong Lyong Ha*

Papers in FTA resear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TA treaties. In this research, more focus was put on the customs laws and related cases delivered in the U.S. federal courts, by which we can analyze the Korea-U.S. FTA in more practical manner to derive the enterprises' solutions to cope with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he Tariff Act of 1930 is the U.S. customs law to govern FTA preferential duties.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with customs duties are coordinated with the FTA rule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U.S. customs law lies in the classification of imported goods for imposition of the customs duties, based 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 that the U.S. federal courts had been quite favorable to the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in litigation with the private importers and exporters. The reason seems to be that the CBP has been dealing with the customs cases so many times, accumulating much experience in execution of the U.S. customs laws, which is likely to make their decisions on customs duties almost free of errors. Therefore, the Korean exporters need to collect the CBP's past cases on the denial of preferential treatment on imported goods and be fully informed of the CBP's policies on the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Key Words : Korea-U.S. FTA, Preferential Duties, Certificate of Origin,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The U.S. Customs laws

*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